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한정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77

발의연월일: 2024. 6. 24.

발 의 자:한정애·장철민·민병덕

문진석 · 송옥주 · 이수진

이학영 • 박지혜 • 강선우

위성락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 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의 국가적 재난을 민방위사태로 규정하면서, 민방위 준비를 위하여 중앙관서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피호 등비상대피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약 1,448만명으로 전 국민의 28% 수준으로 증가하였음에도 반려동물 또는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사람을 위한 비상대피시설은 미비한 실정임. 「동물보호법」에 따르면소유자등은 재난 발생 시 동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,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정한 「반려동물 가족을 위한 재난 대응가이드라인」에서는 재난 발생 시 반려동물과 동반 대피할 수 있는시설을 사전에 파악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, 실제로는 반려동물 동반비상대피시설이 거의 없어 재난사태 대비가 어려운 실정임.

이에 이 법에 따른 민방위 준비에 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(운송용 우리 등을 포함)를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5조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 안」(의안번호 제884호) 및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안」(의안번호 제885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 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 어야 할 것임. 법률 제 호

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민방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1항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의2. 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(운송용 우리 등을 포 함한다.)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5조(민방위 준비) ① 중앙관서	제15조(민방위 준비) ①
의 장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	
수・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	
민방위 계획에 따라 다음 각	
호의 민방위 준비를 하여야 한	
다.	
1. • 2. (생 략)	1.•2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2의2. 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있
	는 시설의 설치(운송용 우리
	<u>등을 포함한다)</u>
3. (생 략)	3. (현행과 같음)
②・③ (생 략)	②・③ (현행과 같음)